

제2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9.11.)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3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4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5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	27
6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0
7	북부사거리~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3
8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6
9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0
10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5
11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봉기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4조)

-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5조)
 -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함(안 제6조)
 - 당연직 8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 ~ 제3조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기금의 운용·관리
 - 안 제4조 ~ 제5조는 회계공무원, 기금의 용도
 - 안 제6조 ~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 안 제10조는 운영세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 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3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나. 관련조문: 제5조(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준비	9,412	500	500	500	500	1,412

3. 관련 의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514백만원)

- 1.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84백만원
- 2. 재난문자전광판 구축: 193백만원
- 3. 폭염대비: 26백만원
- 4. 한파대비: 93백만원
- 5. 가축질병 예방사업: 118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가. 제안이유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2020. 7.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20. 7. 1 전부 개정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 기존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음)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8. 25, 표주숙의원 등 11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20. 9. 1.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 가업승계 농업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제4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 전문인력 육성사업
-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 및 선정, 지원제한 등(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 안 제3조는 책무

- 안 제4조 ~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 안 제6조는 신청 및 선정
- 안 제7조는 지원제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는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사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교육·견학·컨설팅사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들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임.
-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 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방향과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제조업체 등 ⇒ 기업(안 제1조·제3조·제4조)
 -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근로자 ⇒ 노동자(안 제1조~제4조), 경상남도 권고사항

○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29세 ⇒ 34세

○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 ~ 제3조는 애향장려금 지원 및 지원대상 등

-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및 선발

- 안 제5조는 환수를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 따르면,

-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제3조(지원대상)

나. 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을 확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 가. 출연이유
 -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생업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350백만원(증 100백만원)
 - 2020 추경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당초 예산액	변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50	350	350	-	-	350	-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다. 부서의견

- 최근 코로나 19로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 확대로 경남 신용보증의 운용배수 및 손실 증가가 예상이 되어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운용배수의 축소를 위해 거창군에 출연금 1억 5천만을 추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 경남 타시군의 추가 출연금 형평성과 거창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5.8%, 경남도 28.7%, 시·군 6.3%, 금융기관 45.7%, 기업체 등이 3.5%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재단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20년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 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명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 위치
 -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 사업내용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 현 민간위탁 현황

- 수탁자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수탁자 선정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으로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 제공과 농촌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농촌 인력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구간 노상주차장(43면)
- 위탁대상 사무
 - 주차안내 및 지도
 - 주차요금 징수
-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위탁기간 : 2019. 9. 1. ~ 2020. 8. 31./ 1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0. 11. 23. ~ 2023. 11. 22. / 3년간

- 선정방법 : 입찰

- 운영시간(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사거리 43면(525m²)

- 주차요금

급지	시간	1구획 최초 30분까지	최초 30분 초과 15분당	회수권제 1일	정기주차권(월)	
					주간제	야간제
노상주차장		500	250	5,000	50,000	35,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유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주차장법」 제8조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군수가 관리하거나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는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유료 노상 주차장을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조면 양기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0. 8. 24.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농업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사업자 : (주)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1월(4개월간)
- 발전용량 : 29.88kw
- 사업비 : 66,000천원
- 연간수익 : 7,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양기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가조면 기리 625-3(주차장)	699m ²	149m ²	29.88k w	(주)양기마을 신재생에너지 대표 김효수

○ 그간 추진사항

- 2019. 10. : 국비 공모 사업 선정
- 2020. 06. :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에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용허가 신청자 선정과 마을 공동기금 사용용도(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국
농소마을회 소속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으며,
- 환경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 위치 : 거창읍 가지리 188-1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7. 1. ~ 2020. 9.(3년 9개월)
- 사업비 : 2,200백만원(기금 100%)
- 시설현황

(단위 : m²)

구분	용도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비고
합계			796.29	796.29		
1층	교육장	철근 콘크리트	499.29	114.84	지상 3층	
2층	카페, 작은도서관			197.30		
3층	환경교육장, 사무실			187.15		
별관	온실	철골	297.00	297.00		

※ 대지면적 : 1,451m² (약 440평)

○ 그간 추진사항

- '16. 9. : 공모사업 신청 【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군→낙동강청】
- '16. 12. : 2017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 '17.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17. 12. : 토지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11. : 건축공사 착공
- '20. 7.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심사
- '20. 9. : 건축공사 준공 예정

○ 관리 및 운영계획

- 관리방법 : 위탁관리
-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마을회 등에 위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관리비용 : 미지원
유료 교육프로그램 및 카페 운영을 통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
- 운영주체 : 국농소마을회 소속 “강과사람”
2017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 당선

○ 위탁개요

- 위탁범위 :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연장가능)
- 위 탁 료 : 미징수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국농소마을회 소속 “강과사람” 법인이 신청 및 선정됨에 따라,
 - 수계기금이 전액 지원되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위탁료는 미징수
- 위탁사무
 -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및 [별표4]에서 예외적이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 아울러,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년간 『거창하천환경 교육센터』를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가. 제안이유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건립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약초유통센터
- 위치 : 거창읍 대평리 거함대로 3372
- 시설현황 : 부지 3,444㎡, 시설 1,243㎡
 - 세부시설 : 판매장 118㎡, 집하장 및 창고 900㎡,

전처리시설 225m²

○ 위탁사무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그간 추진사항

- 2015년도 : 거함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016년도 :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준공, 공사 계약
- 2017년도 : 거창약초유통센터 착공 및 준공
- 2018. 7. :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18. 11.~12. : 입찰공고 3회 / 단독응모로 유찰
- 2019. : 약초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시설 보완 등
- 2020. : 약초 관계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 위탁운영 보완 계획 수립

○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1. 1. ~ 2023. 12.(3년간)
- 위탁범위
 - 시설 유지관리 : 약초유통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유지관리

- 운영 관리 : 약초의 집하, 보관, 선별, 전처리, 소분, 저장, 판매 등
- 집하장·전처리장과 판매장 분리 위탁
- 수탁자 선정
 - 수탁자격 : 거창군 관내 약초생산자 단체·법인,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향후계획

- 2020. 9월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0. 10월 : 입찰공고
- 2020. 11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2020. 12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공증, 인계·인수, 고시
- 2021. 1월~ : 수탁자(단체) 위탁운영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2017년 완공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거창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과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약초 유통센터』를 민간위탁 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조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8. 2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0. 8. 24.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현수 행복농촌과장]

가. 제안이유

-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개요

- 사업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사업자 : 사단법인 가조면생활체육협의회 대표 임채욱
- 사업기간 : 2020년 8월 ~ 12월(5개월간)
- 발전용량 : 84.66kw
- 사업비 : 165,000천원
- 연간수익 : 21,000천원/정도

※ 수익금 사용

: 가조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체육회법인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

○ 추진사항

- 2019. 9. : 도비 확정
- 2020. 8. : 전기사업허가 추진 중

○ 재산의 표시

위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가조면 마상리 316-17(주차장)	728	126	24.9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1호	
가조면 수월리 453(주차장)	2,242	149	29.88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2호	
가조면 수월리 449-13(주차장)	1,835	149	29.88	사단법인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3호	

○ 향후 추진 계획

- 2020. 9.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원상 복구) 비용 예치
- 2020. 8. ~ 9. : 전기발전사업 허가(경제교통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동의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가조 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가조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활성화 및 가조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함에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용허가 신청자 선정과 향후 수익금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